

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8.07.24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2018년 12월 31일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-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, 한국 보건산업진흥원,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·운영하여,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
- 이에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『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 - 소재지 : 서초구 방배로 173,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 (방배동)
 - 개관일자 : 2013. 6. 1.
 - 규모 : 122.2m²(지상2층) 방배보건지소 내

구분	면적	시설현황
2층	122.2m ²	사무실 46.2m ² , 조리실 76m ²

- 지원대상 :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및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
- 지원 : 104개소 4,020명

나. 주요위탁 내용

○ 위탁근거

- 『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』 시행령 제12조의 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
○ 수탁자 선정방법 : 재위탁 및 공개모집

○ 위탁기간 : 3년
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: 2019. 1. 1. ~ 2022. 12. 31.

※ 현 위탁현황

시설명	위탁법인	위탁기간	경상보조금
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	2016. 6. 1 ~ 2018.12.31 ※ 최초 : 2013. 6. 1.	300백만원

○ 위탁업무

-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의 영양·위생관리 지원 운영
- 어린이 급식용 식단, 매뉴얼, 위생교육 자료 등 개발
- 어린이 식생활지도, 영양교육 기획·개발·프로그램 운영
-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)
-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-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